

##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관련 사건

(2022.1.13.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1노1100 판결, 항소심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 쟁점** 웹하드 업체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판단

- 판시사항**
- ☞ 피고인은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는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적 조치 외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 ☞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범인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책임이 있음.

**시사점**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저작물의 전송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DNA 필터링이나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적용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특성상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있음.

심급	1심 (원심)	2심 (항소심, 확정)
당사자	웹하드 사이트 운영 업체 대표 및 운영 법인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1253	2022노1100
선고일자	2021.4.28.	2022.1.13.
판결결과	유죄	유죄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30호,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인 웹하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이용자들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포인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음.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 되었고, 해당 음악저작물은 즉시 삭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해당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가 발생하여 포인트가 지불되었고, 이를 통해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간접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법원의 판단

### 1. 주요 법리

㉔ **(복제권·전송권 침해 방조 행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함. 이는 정범의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함.

㉔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기술적 통제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저작권법 조항>

####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가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OSP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일정한 요건<sup>1)</sup>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① OSP가 해당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② OSP가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고, ③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며, ④ 권리자가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 2. 피고인의 방조 책임 여부 (긍정)

- ㉠ 피고인은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업로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범인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일반적인 웹하드 사이트의 통상적인 이용 실태,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 등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 내 업로드 된 음악저작물의 상당수가 ‘MV’, ‘앨범모음’이나 가수명, 곡명 등을 제목으로 포함하여 업로드가 되어 있었음을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음악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 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3. 피고인이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부정)

- ㉢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어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저작권자들 또한 일반 사용자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음악저작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검색어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사이트 내 음악저작물들은 음악저작물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제목을 달고 특정 카테고리만 업로드되었는데, 해당 카테고리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4. 저작권자의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발생하는지 (부정)

- ㉣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제104조에 근거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 제104조는 OSP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요청이 없다고 하여 OSP의 복제·전송 중단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 또한, 피고인과 같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게 된다면 저작권자들은 수많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

이용한 경우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⑤ OSP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⑥ OSP가 침해를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⑦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 시사점

이번 판례에서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필터링 기술 적용,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를 하였지만, 이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저작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해서 업로드되어 오고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음. 이처럼 일반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묻는 경우 대부분 상기한 판례와 유사한 논리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반면 다른 판례(2022.5.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513)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기본적인 기술적인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수동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영상을 찾아 해당 영상파일로부터 파일 고유의 해시값 등을 추출하여 추가로 차단하고, 모니터링에도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이미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불법적인 저작물의 전송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DNA 필터링이나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특성상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OSP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술을 적용한 것만으로는 모든 게시물을 감시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처 필터링되지 못한 불법 저작물을 감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금칙어 설정 또한 지속 업데이트하여 금칙어 차단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시도를 무력화하여야 특수한 유형의 OSP는 방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본지의 의견은 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